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유상범·구자근·송석준

임종득 • 박충권 • 정점식

이철규 · 김예지 · 조정훈

김도읍 • 배현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 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 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제4조(직무) ①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	4		
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			
방 및 대응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u>다</u> . (생 략)	<u>라</u> . (현행 다목과 같음)		